

## 學校保健事業政策

金 正 根 \*

### 1. 人口資質向上과 學校保健

우리나라의 人口問題는 過剩人口라는 量的인 問題에서 最近에 와서는 人間能力의 開發을 基盤으로 한 人口의 質의 問題가 中心의 課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人口資質이라고 하면 우선 衛生學의 質의 向上과 國民健康狀態의 改善 등 生物學側面의 接近이 先行되고 그 다음으로 教育 등의 社會科學的側面이 다루어지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教育을 通해서 獲得된 知識이나 技術等이 人口資質의 指標로서 強調되는 傾向이어서 高學歷을 目標로 한 教育의 人的投資는 많았으나 生物學的側面에서의 人口資質論은 거의 潛在해 있었다.

學校保健은 學校라는 限定된 場所와 就學年齡이라는 限定된 時期에 있어서 이지만 人間의 發育이 가장 活潑한 時期이므로 民族의 人口資質의 向上이라는 側面에서 至極히 重要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學校保健은 그 内容을 「學校保健管理」, 「學校保健教育」, 「學校環境衛生管理」, 「學校給食」, 「學校安全管理」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衛生管理의 部分만 보더라도 學生兒童의 發育評價에도 問題가 있고 健康側面에서도 身體障礙兒와 情緒障礙兒, 心臟病, 喘息, 眼疾患, 龋齒等 疾病이 增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政策이나 對策은 거의 論議된 일이 없다. 學校保健은 發育期年齡層의 健全發育과 生物學的側面에서의 民族의 資質向上이라는 立場에서 再評價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稿에서는 學校保健 중 가장 重要한 學校保健管理에 焦點을 두어 이의 改善과 學校保健管理에 關與하는 人力의 役割과 그 養成을 為主로 약간의 考察을 해두기로 한다.

### 2. 學校保健管理의 内容

學校保健管理의 目的是 學生 및 職員의 健康增進을 圖謀함으로써 學校教育의 實施를 圓滑히 하고 그 成果를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保健管理는 各學校의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의 必須의 基盤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이것이 學校保健法의 目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 前까지는 學校保健은 學校醫를 中心으로 한 教育과는 遊離된 形態로 展開되었던 것이 지금은 各學校의 責任하에서 保健管理業務가 計劃되고 實施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健康管理는 身體檢查에 의한 疾病이나 異常을 發見하여는 Screening水準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도 檢查項目이 制限되어 있어 Screening의 目的도 재대로 達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綜合的인 健康檢診을 할 수 있도록 各稱도 健康檢診으로 改稱하고 眼科疾患, 耳鼻咽喉科疾患, 精神科疾患, 心臟疾患, 皮膚科疾患을 包含하는 보다 廣範圍하고 깊이 있는 大幅의 改訂이 必要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異常을 發見해도 거기에 對한 事後處置나 對策이 거의 없었으므로 事後處置의 制度的方案을 모색하고 그 制度를 開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疾病이나 異常에 걸리기 前에 早期發見하고 豐防하는 預防醫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學的 努力이 있어야 한다. 특히 早期發見과豫方이 重視되는 것은 治療의 手段을 갖지 않는先天異常과 各種 身體 및 精神障礙가 이에 속한다. 더욱이 環境衛生이나豫防接種 혹은 個人攝生이라는 對應策을 갖는 感染性疾患은 그豫防이 特히 必要한 分野이고 또 效果의 기기도 하다.

다음은 環境面의 管理로서 學生의 健康을 지키고 發育成長을 促進시키고, 學習能率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衣食住 全般에 걸친 學校環境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學校保健法에 學校環境淨化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學校環境衛生法을 制定하고 學校環境衛生의 基準을 強化 改正해야 할 것이다.

醫療機關이 希少한 地域의 學校保健管理의 問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施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1) 學校醫와 其他人力과 職務內容의 具體화와 處遇의 改善

2) 無醫地區의 學校에 對한 效果의 健康檢診(身體検査)의 實施

(1) 巡迴健康檢診의 實施

(2) 健康檢診을 위한 要綱의 作成

(3) 教育委員會와 關係機關과의 協力

(4) 健康檢診에 必要한 器具의 整備

3) 學校保健委員會의 設置

(1) 各級學校에 保健委員會 設置

(2) 鄰近學校間의 保健委員會 設置

(3) 學校教職員의 確保

특히 學校保健推進의 原動力으로서는 學校教職員, 養護教師, 醫師, 師親會, 學校保健委員會 등의 協力에 의한 組織的側面의 充實이 緊急을 要하는 課題이다.

4) 健康檢診의 事後管理

保健管理上 가장 重要한 것은 健康檢診後의 事後管理라고 할 수 있다. 健康檢診實施後 그 結果에서 生產되는 情報도 없고, 情報가 있다 하더라도 檢診過程이나 情報處理過程에서의 未

備點 때문에 信賴할 수 없다면 健康檢診後 當然히 뒤따라야 할 事後措置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當然하다.

이와같은 問題의 解決은 國家水準에서 短時日內에 改善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므로 學校를 中心으로 地域單位에서 情報의 生產과 流通을 위한 制度를 謂發定着시켜 漸次 全國的으로 擴大시켜 나가는 戰略을 생각할 수 있다. 學校保健을 地域醫療「시스템」의 범주내에서 把握하려는 接近은 이러한 理解와 試圖에서 비롯된 것이다.

事後管理는 養護教師, 擔任教師, 校長, 學父母 및 保健所要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營養士 및 衛生士가 共同으로 要精密檢查, 要加療의 學生에 對한 管理를 實施함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該當學校가 中心이 되어 學校保健委員會를 地域單位로 構成할 것도 생각될 수 있다.

특히 學校保健이라 立場에서의 事後管理는 教育에서 始作하여 教育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養護教師는 委員會의 協力を 얻어 學生個個人에게 自己管理에 重點을 둔 철저한 指導를 하는 것이 管理原則이다. 健康檢診을 받은 學生에게는 檢診을 받는다는 受動의 인 자세가 아니고 스스로 實行한 健康生活에의 努力의 結果를 判定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

〈表1〉 身體検査 事後管理에 있어서의 指導內容

區 分		內 容
生活	要 休 學 要 授業制限	休學이나 休職이 必要한 경우 授業에 制限을 加할 必要가 있는 것
	要 注 意	正常授業을 받되 繼續의 健康相談과 指導가 必要한 것
	健 康	正常的인 生活活動이 可能한 것
醫療	要 治 療	醫師에 의한 直接治療行爲가 必要한 것
	要 觀 察	定期의으로 醫療觀察과 指導가 必要한 것
	健 康	醫師에 의한 醫療行爲가 全然 必要없는 것

록 해야할 것이다.

事後管理의 具體的인 指導內容은 表1과 같아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身體検査의 結果에 의해 義務教育의 免除, 運動 및 授業의 制限特殊學校에의 就學指導, 健康相談, 治療의 勸告, 健康診斷 등을 받도록 指導할 것이 法에 規定되어 있는 内容이다 (學校身體検査規定 第10條)

## 5) 學校安全管理

最近 學校에 있어서의 安全事故가 늘어나고 있는데 學校保健法에는 學校安全에 關한 事項이 없다. 學校安全은 學校에 있어서의 安全教育과 安全管理를 適切히 함으로써 學生의 安全에 對한 知識과 實踐ability을 부여하고 施設, 設備 및 學生과 教職員의 學校에 있어서의 安全을 確保하는데 있다. 그래서 學校保健法에 安全計劃이나 安全管理에 關한 規定을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學校保健에 關與하는 專門人力과 役割 및 改善해야 할 課題

學校保健管理의 最高의 責任者는 물론 學校長이다. 그러나 學校는 學生들의 安全育成을 追求하는 共通의 理解와 責任을 지닌 教師의 組織的 集團이다. 그래서 枝端의 分擔이 組織化되는데 직접 學生의 健全育成을 擔當하는 것은 擔任教師와 養護教師이며 특히 後者가 많아서 하는 役割은 廣範하고 重要하다.

現在는 養護教師가 學校保健의 計劃과 實踐을 專擔하는 唯一한 專任教師인데 그외에 保健主任을 두는 것도 研究해 볼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保健主任은 學校保健委員會를 둘 경우 全體運營을 맡는다. 그리고 養護教師와의 協力하에서 學校保健計劃策定의 中心이 되고 또 그 計劃의 의거한 活動의 推進에 있어서는 一般教員을 위시해서 學校給食主任, 體育主任, 校醫, 歯科校醫 및 學校藥師 등 모든 職員의 活動이 組織的으로 圓滑히 展開하게끔 調整하는 役割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保健主任이란 保健에 關한 諸般事項의 連絡調整者라고 할 수 있다. 保健主任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養護

教師에게 保健主任의 役割을 맡기고 그 擔當役割을 明文化시켜 놓을 必要가 있다. 學校保健에從事하는 校外人力으로서는 校醫, 學校齒科醫, 學校藥事가 있는데 이들의 役割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養護教師

養護教師는 學校保健法 15 條 및 同法施行令 6 條에 의거한 養護業務에 從事한 專任保健人力이며 教育法 79 조에 의해 教員으로 認定되고 있다. 資格基準은 大學의 看護學科 혹은 專門大學의 看護科卒業者로서 看護 免許證을 所持한 자로서 在學中 所定의 教職學點을 取得한 者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 相當數의 養護教師는 保健에 對한 理解가 未熟하고 專門性도 缺乏되어 있을 뿐 아니라 職業에 對한 意識이 相對的으로 다소 不足한 탓으로 學校保健活性화의 하나의 問題點으로서 指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資格規定을 強化하던지 就業後의 補修教育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養護教師는 專門的 立場에서 모든 學生의 健康 및 環境衛生의 實態를 把握하고 疾病이나 情緒障礙, 體力, 營養에 關한 問題 등 心身의 健康에 問題를 갖는 學生의 個別指導를 積極적으로 協力하는 役割을 갖는 것이다.

養護教師의 役割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學校保健情報의 把握

- 體格, 體力, 疾病, 營養狀態의 實態
- 保健·安全教育實態
- 健康生活의 實踐狀況의 實態
- 不安이나 苦悶等 精神健康에 關한 實態
- 性問題에 關한 實態
- 學校環境衛生에 關한 實態
- 養護室에서 把握한 傷病의 實態

#### (2) 保健指導

- ① 個人을 對象으로 한 指導
  - 心身의 健康에 問題를 갖는 學生의 指導
  - 健康生活의 實踐에 問題가 있는 學生의 指導
- ② 集團을 對象으로 한 指導
  - 學級에서의 指導

- 學校行事에서의 保健指導
- (3) 救急處置
- (4) 健康檢診과 健康相談
  - ① 定期, 臨時의 健康診斷의 實施計劃立案準備, 評價
  - ② 健康檢診의 事後處置에 關한 計劃
  - ③ 健康相談
- (5) 學校環境衛生活動의 參加
  - ① 學校藥師가 하는 檢查의 準備, 實施, 事後處置에 關한 協力
  - ② 環境衛生에 關한 日常點檢
- (6) 學校保健에 關한 各種計劃의 立案
  - ① 學校保健計劃
    - 保健指導의 計劃
    - ② 一般教員이 하는 保健活動에 對한 協力
    - ③ 學校保健委員會의 企劃運營에 參加
  - (7) 養護室의 運營
    - 養護室의 施設, 設備 및 器具의 整備
    - 救急藥品, 材料의 整備와 保管
    - 保健에 關한 諸情報의 整備, 保管
    - 健康相談, 救急處置, 保健指導를 하는 곳으로서의 環境設定과 整備
  - (8) 傳染病, 食中毒의 豫防

## 2) 校 醫

- (1) 學校保健計劃의 立案에 參與
- (2) 學校環境衛生의 雜持 및 改善에 關해 學校藥師와 協力하여 必要한 指導와 計劃에 參與
- (3) 健康診斷
- (4) 疾病의 豫防處置 및 保健指導
- (5) 健康相談
- (6) 傳染病의 豫防을 위한 必要한 處置 및 食中毒의 豫防處置
- (7) 教育委員會가 設置될 경우 委員會에 參與
- (8) 其他 保健管理에 關한 專門的 사항에 指導

## 3) 歯科校醫

- (1) 學校保健計劃의 立案에 參與
- (2) 健康診斷 중 歯牙檢查
- (3) 龈齒 및 其他 歯科疾患의 豫防處置

- (4) 歯科에 關한 健康相談
- 4) 學校藥師
  - (1) 學校保健計劃의 立案에 參與
  - (2) 學校環境衛生에 關한 事項
    - 飲料水 및 用水의 檢查
    - 教室內의 空氣検査
    - 探光 및 照明의 檢查
    - 校內消毒 및 鼠族, 昆蟲 등의 驅除
    - 給食用의 食品 및 器具의 卫生検査
  - (3) 醫藥品 및 保健管理에 必要한 指導
 

校醫와 歯科校醫 및 藥師는 校外 保健人力으로서 위에서 例據한 바와같은 役割을 맡게 되어 있는데 이들에 對한 處遇가 낮아 自發的인 參與度가 매우 낮고 校醫側에서도 이들을 活用하려는 姿勢가 부족한 것이 現實이다.

韓國教員大學의 朴榮洙教授의 校醫에 對한 活用方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은 手當 때문에 짧은 時間에 너무 많은 學生을 健診함으로 지나치게 形式的이고 이로 因해 學生들에게 醫療人에 對한 不信感마저 생길 수 있다는 指摘이 있어 校醫의 處遇改善이 要望된다.

2) 醫師自身이 學校保健에 對한 使命感이 없으므로 醫學教育의 教科課程에 學校保健學을 넣고 醫師修練의 一次期間을 地域社會內 學校에서 實習하도록 함으로써 學校醫로서의 資質을 滋養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現行 公衆保健醫制度를 無醫地域에 配置하는 代身 無醫地域에 所在하는 初中等學校에 配置함으로써 住民과 學生의 保健management를 同時に 하는 制度로 改善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다.

## 5. 그 以外 學校保健活性化를 위한 提案

### 1) 學校保健委員會의 強化

文教部는 學校保健委員會를 強化하여 學校保健을 위한 基本政策樹立의 諸問을 求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委員會는 大韓

醫學協會, 歯醫學協會, 看護協會, 結核協會, 寄生虫豫防協會 및 保健分野研究機關의 代表者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保健社會部, 世界保健機構, 內務部의 關係者와 大學의 專門家로 構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委員會는 그 專門領域에 따라 校醫, 歯科保健, 環境管理, 給食, 學校保健情報 등 分科委員會를 下部組織으로 두고 運營함이 보다 效率的일 것이다. 그리고 各級學校에도 그 地域의 可用人力資源을 充分히 活用하여 學校에 保健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이 制度化되어야 한다.

## 2) 學校保健管理行政 調整器構의 設置

學校保健이란 文教當局만이 全責任을 져야 할 獨特한 分野라는 그릇된 認識이 뿌리 깊이 남아 있다. 이로 因해서 地域保健의 一環으로 學校保健을 支援하려고 해도 오히려 行政의 周邊에서 이를 鈍化하리는 風潮도 있다. 따라서 文教部는 他部處와의 協議機構(例로서 學校保健運營委員會)를 組織運營함으로써 行政의 水平組織을 補強하고 學校保健管理, 保健教育 및 學校保健組織活動을 極大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協議機構에 包含되어야 할 部處는 保健社會部, 內務部, 環境廳, 勞動廳, 交通部, 科技處 및 經濟企劃院等 될 것이다. 그리고 各敎育委員會와 敎育(區)廳도 그 地域水準에 該當하는 上記와 같은 協議機構를 組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通해서 學校保健管理의 圓滑化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地域에서 活用할 수 있는 모든 保健資源(人力 및 施設)을 動員할 수 있도록 民間團體를 包含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 3) 學校保健管理評價의 體系化

學校保健管理를 위한 健康評價는 健康檢診에

서 얻은 情報에만 依存하고 있어 많은 矛盾과 問題點을 안고 있다. 每年 實施하도록 되어 있는 身體検査는 疾病과 异常의 有無, 身體의 發育狀況에만 重點을 두고 있고 斷面的일 뿐 아니라 檢査項目이 靜的인 것이다. 臨床検査와 그 分析技術이 크게 進步된 現實을勘案할 때 身體検査를 健康檢診으로 代替하고 檢査項目를 대폭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保健調查도 並行해서 보다 動的(dynamic)인 健康管理를 展開할 수 있을 것이다.

人力의 資源化를 至上目標로 삼고 있는 文敎政策에서 教育水準의 高度化에 先行되어야 할 것이 保健學의 側面에서 본 人口資質의 向上일 것이다. 人口資質向上이라는 目標志向下에서는 政策樹立의 基礎的인 情保로서 健康評價를 할 수 있는 情報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保健調查, 健康檢診 및 이에 대한 事後管理體系의 確立이 要請된다.

## 4) 養護教師의 管理職化 및 保健學敎科의 開設

現在와 같이 校醫는 非常任으로 되어 있고 學校保健業務의 專擔者인 養護教師는 學校運營의 意思決定이나 敎育에 參與하기 힘든 學校保健의 體制下에서는 專門的인 學校保健의 運營을 기할 수 없고, 단순히 行事化한 學校保健프로그램의 實施에 그치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學校保健事業을 圓滑하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一般敎師와 別途로 養護教師를 管理職의 保健教師로 補充으로써 校内外의 關聯된 保健關係部署 및 人士들과 能動的인 協力關係를 構築하여 效率的인 學校保健事業遂行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들을 保健教師로 活用하여 初中等學校의 敎科課程에 保健學講座를 新設함으로써 所期의 保健敎育目標를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